

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1년 8월 10일

나. 회부일자 : 2001년 8월 13일

3. 제안이유

- 증평종합스포츠센터의 건립은 생활체육의 공간을 확충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 증평 주민의 숙원사업임.
- 증평지역은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20여개의 경기단체(2,300여명)가 활동하고 있으나, 실내체육 활동공간이 부족한 실정임.
- 2001년도 지방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국비 30억원 지원계획이 확정 통보되어,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인 지방비(시설비 30억원, 부지매입비 10억원) 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함
-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(공유재산의 취득)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□ 재산의 취득

- 위 치 : 괴산군 증평읍 송산리 235번지 일대 (운동장 시설부지)
- 규 모 : 부지 19,800㎡, 연건평 4,000㎡(지하1, 지상2층)
 - 지하층 : 샤워실, 기계실, 보일러실, 전기실 등
 - 1 층 : 볼링장, 체력단련실, 관리실, 휴식공간 등
 - 2 층 : 간이골프장, 탁구장, 에어로빅장, 스쿼시장, 회의실 등
- 용 도 : 체육시설
- 사업기간 : 2001. 9월 ~ 2003. 12월
- 사 업 비 : 7,000,000천원 (국비 3,000,000, 도비 등 4,000,000천원)

5. 검토의견

-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

본 안건은

2001. 4. 11일 제출되어 4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, 제1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(2001. 4. 18) 심의 중 과도한 예산소요 및 유지관리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심사보류 하였으나,

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1. 8. 13일 동 계획안에 대한 철회 안의 제출과 함께,

증평 스포츠센터의 부지면적 (33,000㎡ ⇒ 19,800㎡)과
 총사업비를 당초 85억원에서 15억원이 삭감된 70억원으로 축소
 조정하고,
 유지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도입시설 중 수익성이 불투
 명한 수영장 등을 제외하고 볼링장 등으로 변경하여
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
 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,

증평 스포츠센터 건립은 국고지원사업으로서
 생활체육 인구가 20여개 단체에 2,300여명일 뿐 아니라 상시 이
 용할 수 있는 증평읍 인구가 3만명에 달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
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성은 인정되나,

소요 사업비 70억원 중 국고보조 30억원을 제외한
 40억원의 도비 지원이 불가피한 바

이에 대한 재원확보 및 향후 구체적인 유지관리방안 등에 대하
 여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: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